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306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,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'16.1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음
- 나. 안정적인 열공급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열수송관 적기 교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,
- 다. 「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개요

- 대 상 : 서울에너지공사
- 출자규모 : 6,000백만원
 - 노후 열수송관 교체 : 6,000백만원

(단위 : 억원)

사업명	소계	'22년	'23년	'24년	'25년	'26년
합 계	699	59	200	140	240	60
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	699	59	200	140	240	60

나. 출자 필요성

-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열수송관의 노후화가 지속 진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. 이를 위하여 '26년 사업비를 출자하고자 함
- '26년 노후 열수송관 5.2km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, 지방공기업법

○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<생략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○ 지방공기업법

제53조(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~③ 항 생략

나. 예산조치 : '26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 예산 반영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박필관 (☎ 2133-3554)